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□ 재외동포(F-4)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</p> <p><u>1. 일반 기준</u></p> <p>가. <u>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(39개)</u></p> <p>(1) 건설단순종사원</p> <p>(2) 광업단순종사원</p> <p>(3)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</p> <p>(4) (현행과 동일)</p> <p>(5)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</p> <p>(6) ~ (12) (현행과 동일)</p> <p>(13) 수동포장원</p> <p>(14) 수동상표부착원</p> <p>(6) ~ (12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6) 주유원</p> <p>(27) 매장정리원</p> <p>(28) ~ (32) (현행과 동일)</p> <p>(33) 자동판매기관리원</p> <p>(34) (현행과 동일)</p> <p>(35) 주차안내원</p> <p>(36) ~ (39)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-----</p> <p>-----</p> <p>○ ~ ○ (현행과 동일)</p> <p>다. -----</p> <p>-----</p> <p>(1) ~ (8)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2. 예외 기준</u></p> <p>○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 1호 관련</p> <p>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·군·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(F-4)는 취업할</p>	<p>□ 재외동포(F-4)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</p> <p><u>1. 일반 기준</u></p> <p>가. <u>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(29개)</u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(4) (현행과 동일)</p> <p><삭 제></p> <p>(6) ~ (12) (현행과 동일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(6) ~ (12) (현행과 동일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(28) ~ (32) (현행과 동일)</p> <p><삭 제></p> <p>(34) (현행과 동일)</p> <p><삭 제></p> <p>(26) ~ (39)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-----</p> <p>-----</p> <p>○ ~ ○ (현행과 동일)</p> <p>다. -----</p> <p>-----</p> <p>(1) ~ (8)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2. 예외 기준</u></p> <p>○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 1호 관련</p> <p>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·군·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(F-4)는</p>

현 행	개 정
<p><u>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(다만, 나목은 제한)</u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재검토기한</p> <p>○ <u>법무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</u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다른 규정의 폐지</p> <p>○ <u>재외동포(F-4)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(법무부 고시 제2018-70호, '18. 3. 26.)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</u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시행일 : <u>2023. 5. 1.부터</u></p>	<p><u>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(다만, 나목은 제한)</u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재검토기한</p> <p>○ <u>법무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</u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다른 규정의 폐지</p> <p>○ <u>재외동포(F-4)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(법무부 고시 제2023-187호, '23. 5. 1.)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</u>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시행일 : <u>2026. 2. 2.부터</u></p>